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경 찰 청 장

I 채용 분야 및 인원 [3개분야 총 2,560명 선발]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계	2,560	808	157	114	134	31	29	57	329	121	142	111	154	40	77	118	106	32
남자	1,760	482	114	87	102	23	22	42	241	91	100	83	116	27	51	80	75	24
여자	680	206	43	27	32	8	7	15	88	30	42	28	38	13	26	38	31	8
101경비단 (남자)	120	120	-	-	-	-	-	-	-	-	-	-	-	-	-	-	-	-

※ 현재 주거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방청에 원서접수

II 시험 절차 및 일정

※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절차 (합격결정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8. 7.(금) 15:00 ~ 8. 18.(화) 18:00 / 12일간		
1차 시험 (50%)	필기시험	9. 11.(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9. 19.(토) 10:00 ~ 11:40(100분)	9. 25.(금) 17:00
2차 시험 (25%)	신체·체력· 적성검사	9. 25.(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9. 28.(월) ~ 10. 30.(금)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통보
3차 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1. 9.(월) ~ 11. 1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 시험 (25%)	면접시험	11. 13.(금)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11. 23.(월) ~ 12. 8.(화)	12. 11.(금) 17:00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접수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지

Ⅲ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 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 **접수 기간** : '20. 8. 7.(금) 15:00 ~ 8. 18.(화) 18:00 <12일간>
 -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 접수취소는 원서접수 기간을 포함, 8. 26.(수) ~ 9. 15.(화)간 가능하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20. 8. 26.(수)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5,000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교체 불가
- **서류 제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아래의 서류* 제출, 세부 사항은 별도공지
*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개인신용정보서, 자격요건 관련서류,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TBPE 포함), 가산점 자격증 등

제출 서류명	발 급 장 소
고교생활기록부	인터넷발급(민원24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색), 주민센터
개인신용정보서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 무료 발급) △(주)코리아크레딧뷰로 △(주)나이스신용평가정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20. 5. 8.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 약물검사(TBPE)로 발급시일이 소요되므로 1차 합격발표 즉시 준비

IV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등 시험 부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붙임1 참조)

□ 응시 연령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

채용분야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일반공채(남·여), 101단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2002. 12. 31.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병역 : 제한 없음

□ 신체 조건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구 분	합 격 기 준
체 격	국·공립·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신	색신 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국·공립·종합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사 시 (斜 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함(단, 안과전문의의 정상판단을 받은 경우는 가능)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함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함. 【붙임2】, 【붙임2-1】, 【붙임3】 및 공고문 10페이지 ‘신체검사’ 참조

□ **면허 및 가산점**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 운전면허 :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해야 함(도로교통법 제80조)
※ 원서접수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12. 8.)까지 유효하여야 함

- 자격증 등 가산점 기준일

구 분	기 준 일
학위 및 자격증	▶ 적성검사 마지막 날(10. 30.)까지 유효해야 함
어학능력 자격증	▶ 면접시험일 첫날(11. 23.)까지 유효해야 함

V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 **1차 시험(필기시험)**

- 일 시 : 2020. 9. 19.(토) 10:00 ~ 11:40
- 장 소 :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 공고(9. 11.)
- 시험과목
 - － (필수) 한국사, 영어
 - － (선택3)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 문제 및 가답안은 '20. 9. 19.(토) 12:00, 확정답안은 '20. 9. 21.(월) 18:00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자료실(문제 및 정답)에 공지 예정
※ 문제 이의제기는 '20. 9. 19.(토) 12:00 ~ 9. 20.(일) 18:00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필기시험 이의제기」에 접수(응시생만 가능)
- 합격자 결정 방법 :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동점자는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최 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필기시험 합 격 자	150%	160%	170%	180%	10명	9명	8명	6명	3명

※ 필기시험 성적공개 기간 : '20. 10. 14.(수) ~ 12. 13.(일) <2개월간>, 원서접수사이트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 신체 검사

- － (관련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 [붙임 2], [붙임 3] 참조

- － (시험방법) 국·공립, 종합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와 별도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신체검사표’에 따라 신체검사 판정관이 합격여부 종합판단
- － (합격자 결정) 국·공립, 종합병원에서 시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자체 신체검사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함

○ 체력 검사

- － (시험종목)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악력, 100m 및 1,000m달리기
- － (불합격)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 종목별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은 [붙임 4], [붙임 5] 참조
- － (도핑테스트) 금지약물 사용 등 체력시험의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 시험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로(응시생의 5%) 「도핑테스트」 실시

※ 도핑테스트 세부사항은 [붙임 6], [붙임 6-1], [붙임 6-2] 참조

○ 적성 검사 :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450문항, 130분)

※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응시자는 합격자로 결정
- ※ 별도의 합격자 공지 없고, 불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4차 시험(면접시험)

-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단 계	평 가 요 소	배 점
1단계 면접 (집단 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및 전문지식	10점 (1점~10점)
2단계 면접 (개별 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준법성	10점 (1점~10점)
가산점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	5점 (0점~5점)
계	25점	

- 최종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 면접시험 25% (자격증 5% 포함)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의 순위에 따라 결정

VI 임용 등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인력수급에 따라 임용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다른 지방청으로는 10년간 전보를 제한함
-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 또는 특별경비부서 근무를 하여야 함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작성 및 자격 미비자의 응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 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가산점을 기입하여야 하고 이후 자격 취득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업지원 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 시험일정 등 관련정보는 접수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마.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검사 일까지('20. 10. 30. 기준) 제출 하셔야 인정됩니다.
- ※ 가산점은 최고 5점만 인정되고,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것만 인정되며, 어학자격증은 면접일 기준('20. 11. 23.) 2년 내 것만 인정됩니다.
- ※ 가산점 인정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붙임 7-1], [붙임 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 경찰청에서 공고한 시험일시·장소에 늦게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바랍니다.
- 사. 원서접수 마감은 '20. 8. 18.(화) 18:00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모든 시험은 응시한 지방청(응시번호별)의 지정된 시험 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 응시불가)
- 자. 이 시험계획(일정, 장소)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나. 감염병의심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국내외 발생지역 방문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시험응시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 시작 전 및 시험 진행 중 유증상자는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조치 합니다.

- ▶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
- ▶ 그 밖에 감독관이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기시험 유의사항

- 가. 시험당일 09시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붙임 1,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참조
- 나. 필기시험 OMR 답안지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한 문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다.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8 참조)
※ 일반공채(101단)의 선택과목은 「조정점수제도」 시행
- 라.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와 모자를 휴대·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통신장비를 지참한 경우 시험실시 전 시험실 앞쪽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자진 제출하거나,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
-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바.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 가능한 시계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 사. 답안지 교체는 시험 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 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유의사항

- 가.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 나.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다. 체력시험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라.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착용은 가능하나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 바. 체력시험 중 관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 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 유의사항

- 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나. 신체검사는 체내 잔류하는 약물검사(TBPE)를 위해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 병원 등에서 원서접수일 기준 3월 이내('20. 5. 8. 이후 발급)에 실시하여야 하고,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병원 아닌 의원 不可)
- 다.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 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라.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마.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응시한 지방경찰청 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교육계 (02) 700-260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내자동)
- 부산지방경찰청 교육계 (051) 899-2332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 대구지방경찰청 교육계 (053) 804-7034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7
- 인천지방경찰청 교육계 (032) 455-2232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
- 광주지방경찰청 교육계 (062) 609-2635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
- 대전지방경찰청 교육계 (042) 609-243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7
- 울산지방경찰청 교육계 (052) 210-2333 울산시 중구 성안로 112(성안동)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육계 (031) 888-243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교육계 (031) 961-2432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23번길 22-49
- 강원지방경찰청 교육계 (033) 248-0432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충북지방경찰청 교육계 (043) 240-2432 충북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충남지방경찰청 교육계 (041) 336-2432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전북지방경찰청 교육계 (063) 280-823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전남지방경찰청 교육계 (061) 289-2635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 경북지방경찰청 교육계 (054) 824-2232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77
- 경남지방경찰청 교육계 (055) 233-233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 제주지방경찰청 교육계 (064) 798-3431 제주시 문연로 18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形)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2**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공통)**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별표5>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색신이상(약도 색신이상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의 정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사지의 완전성"과 "문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붙임 2-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101경비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1조 <별표3>

구 분 부분별	신 체 조 건
체 격	체력이 강건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흉, 목, 구,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신 장	170cm 이상이어야 한다.
체 중	60kg 이상이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색 신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기능 장애가 없어야 한다.
용 모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붙임 3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세부기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사지의 완전성	팔다리와 손·발가락의 완전성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 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내반슬 (오다리)	차렷 자세에서 양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벌어지는 사람 중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붙임 4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m 달리기(초)	13.00이내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0이후
	1,000m 달리기(초)	230이내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272	273~279	280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 자	100m 달리기(초)	15.50이내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0이후
	1,000m 달리기(초)	290이내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339	340~347	348이후
	윗몸일으키기(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미터 달리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붙임 5 |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시설, 인원 및 방법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별표2)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이상 나. 시설기구 1)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방법 1)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
1,0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이상 나. 시설기구 1) 400m(200m) 타원형 트랙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방법 1) 타원형운동장 또는 노상경주 코스를 사용한다. 2)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기록원 1명이상 나. 시설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이상) 다. 측정방법 1) 양발을 30cm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2)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3) 양팔꿈치로 양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도중 목뒤에 마주잡은 손을 떼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악력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기록원 1명이상 나. 실시도구 악력기 다. 측정방법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라.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평균을 측정한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이상 2) 기록원 1명이상 3) 검사원 1명이상 나. 실시도구 매트, 초시계 1개 다. 측정방법 1)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3)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I. 금지약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 pentazocine ▶ pethidine

II. 금지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경찰청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붙임6] 참조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 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원서접수 시 하여야 하며, 동의를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붙임 6-2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 남 ☐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 응급 ☐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 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붙임 7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 취업지원대상자(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단계별 시험에 가점비율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필기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원점수와 조정점수 모두 40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고, 이후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자격증 등 소지자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함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3조 4항에 의하여 동일분야의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할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함
-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참조(붙임7-1)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취업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입력해야 하고, 이후 자격 취득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가산점으로 인정함
-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일(10. 30.) 까지임

붙임 7-1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별표6)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	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 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 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 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 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 국 어	영 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일 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	동	-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 4단 이상	-무도 2·3단
부	동 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	-청소년상담사 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 · 안전관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 가스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 가스·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 가스·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화 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의 료	-의사 -상담심리사 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작업치료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 시공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 술사	-전기·전기공사기사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 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 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는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 '12. 1. 1. 이후,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워드프로세스 1급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

붙임 7-2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58개)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9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9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20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101경비단), 경찰행정학과 경채 -

목 차

【한 국 사】	-----	1
【영 어】	-----	3
【형 법】	-----	5
【형사소송법】	-----	7
【경찰학개론】	-----	9
【국 어】	-----	11
【수 학】	-----	13
【사 회】	-----	15
【과 학】	-----	17
【수 사】	-----	19
【행 정 법】	-----	21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답안지

답안지를 받는 즉시, 시험 응시표에 기재된 시험과목을 순서대로 기입

분야	시·도	응시 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01 02 03 04 05 06 07 08 09	01 02 03 04 05 06 07 08 09	01 02 03 04 05 06 07 08 09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학력성명	
필적감정용 기재란	(배시) 위 응시지와 동일함.

검인	검인 경찰청장	감독관 확인란	인
----	------------	---------	---

(제 1 과목)				
문번	1	2	3	4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제 2 과목)				
문번	1	2	3	4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제 3 과목)				
문번	1	2	3	4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제 4 과목)				
문번	1	2	3	4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제 5 과목)				
문번	1	2	3	4
1	1	2	3	4
2	1	2	3	4
3	1	2	3	4
4	1	2	3	4
5	1	2	3	4
6	1	2	3	4
7	1	2	3	4
8	1	2	3	4
9	1	2	3	4
10	1	2	3	4
11	1	2	3	4
12	1	2	3	4
13	1	2	3	4
14	1	2	3	4
15	1	2	3	4
16	1	2	3	4
17	1	2	3	4
18	1	2	3	4
19	1	2	3	4
20	1	2	3	4

음식자
준수사항

□ □ **답안지 작성요령**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안지는 OMR로만 판독하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시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OMR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특정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보기> 알맞은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 ⊛

2.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필 등에 의한 예비미강, 미세한 이종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담안지에 번진 경우 등에도 점수산출은 OMR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담안자를 받는 즉시 분야, 시도,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한 후 해당관에 정확히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로 표기하고, 한글성명을 정자로 기입합니다. 담안자를 교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빼지 않아 본인이 작성 작성(표기) 해야하며, 작성된 담안자는 1인이 배만 유효합니다.

(교체 전 담안지는 폐기처리됨)

4. 필적 감응용 기재

(예시)와 동일한 내용을 본의 필적으로 아래 빈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지 편철이 과목순서와 맞는지 여부, 문제지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6. 담안은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 표기된 부분을 굵거나 수정스티커,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답안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해답을 무효로 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하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부정행위자는 경찰공무원법 제8조의2에 의거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분야 코드】

분야	번호
일반남자	01
일반여자	02
전역경쟁채	03
101단	04
경찰행정학과	05
법학	06
세무회계	07
사이버수사	81
교통공학	91

【응시지구(시·도) 코드번호】

응시지구	번호	응시지구	번호
강원청	01	경기북부청	10
서울청	02	강원청	11
부산청	03	충북청	12
대구청	04	충남청	13
인천청	05	전북청	14
광주청	06	전남청	15
대전청	07	경북청	16
울산청	08	경남청	17
경기남부청	09	제주청	18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